

## 한변, 코로나 희생자 유족 대리하여 국가에 손해배상 제기

일 시 : 2020. 7. 31(금) 11:00

장 소 :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기자회견)

한변은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고 올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처음으로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 일부를 대리하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왔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위기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2013년부터 시작된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과 2016년 이전부터 준비해온 메르스 대응지침 등을 통하여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기병상 확보, 수요증가시 대책을 국가가 선제적·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는 수십만의 국민들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의 근원인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이웃 ‘대만’의 경우와는 달리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의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온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적극적인 코로나 퇴치운동과, 우수하고 희생적인 의료인들 및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피해악화를 막아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한변은 정부의 초기 예방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대구 지역 코로나 희생자 6명의 유족 19명을 대리하여 정부의 부실한 대응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우선 일부청구로써 약 3억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바이다.

2020. 7. 3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